

□ 노인학대 정의 ...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2 제4호

- 노인(만 65세 이상)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

□ 노인학대의 유형 ... 「노인복지법」 제1조의2와 제39조의9 규정 바탕

유형	정의	대표적 행위
신체적 학대	·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	·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림 · 감금, 거주지 출입통제, 신체구속 행위
정서적 학대	·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	· 쳐다보지 않고 무시, 대화하지 않음 · 위협, 협박, 고함, 욕설, 모욕 등 행위
성적 학대	·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	·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 ·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, 기저귀 교체, 목욕케어 하는 행위
경제적 학대	· 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	·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· 노인의 물건,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 · 대리권을 악용하는 행위
방임	·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	· 스스로 식사, 배변처리,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·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·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
유기	·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	·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행위 ·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

□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

종사자의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

-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.
-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,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.
-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.
-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.
-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.
-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.
- 노인의 건강상태,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노인의 면회나 외출,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.
-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.
- 노인의 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.
-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.

(출처) 2024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(Ⅱ), 시설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